

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7가합19565 판결 [제작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1. 8. 5 선고 2020나141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7가합19565 판결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윤우정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도우 담당변호사 현희철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수

변론 종결2020. 4. 2.

판결 선고2020.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46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2,728,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 관련사업장비 및 설비배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장비조립 및 인원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C사는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중국 청두(成都)에 OLED 생산공장(공장명: F)을 건설하고, OLED 공정장비 및 물류자동화 설비를 제작하여 위 공장 내에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F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E는 2016.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F 공사 중 FTE/PNP(4F), MCT 연결 PNP, MG V CART 등 설비의 제작·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2,6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은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원고는 2016. 8. 16. 피고와, 원고가 E로부터 수급한 위 공사 중 FTE+OHC V, TALLER PNP1), 총내 PNP2), MCT3) 등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7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은 2017. 2. 28.까지로 각 정하여 제작·설치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주제작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원고(이하 '갑'이라 함)과 피고(이하 '을'이라 함)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탁한 시스템을 제작, 납품, 시운전 수행시 필요한 상호간 관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업무는 다음 각 항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① 장비의 조립 및 납품과 장비의 시운전의 업무
- ② 기타 장비 조립 및 납품과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는 업무

제6조[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지체상금

가. '갑'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을'이 물품의 인도를 지체하였을 경우는 '갑'은 지체 1일당 총 계약금액의 3/1000의 지체상금을 잔금 지급시 공제하고 '을'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나.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며, 이러한 사태 발생시에 '을'은 '갑'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은 이유 있다고 판단될 시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사급자재 등]

- ① '갑'은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을'과 협의하여 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자재'라 함)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내용 변경, 해제, 해지]

② '갑'와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서면을 통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제조한 물품의 품질이 '갑'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

라.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 혹은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이행거부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한 경우 혹은 상대방의 이행거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첨 1]

1. 공사명: F

2. 제작수량: 1식 [기구 Part] (FTE+OHCV, TALLER4) PNP, 총내 PNP, MCT)

3. 제작범위: 위 2항의 제작수량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별첨 25)]

사급품

1. Structure(제관품) 전량 사급, 조립에 필요한 Bolt도 전량 사급

2. Profile 전량 사급

8. SET-UP 장비는 전량 사급(양중용 JIG제작은 협의 진행)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과 계약 해지 통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2. 9.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포기하였고, 원고는 2017. 2.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 제2항 '가', '라'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2017. 2. 10.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원고는 2016. 8. 29.경부터 2017. 1. 20.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공사대금 지급내역표(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내역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815,1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2016. 8. 29.	56,100,000	E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배서하여 교부
2	2016. 8. 29.	57,200,000	상동
3	2016. 9. 8.	206,800,000	계좌 송금
4	2016. 9. 30.	55,000,000	계좌 송금

1	2016. 8. 29.	56,100,000	E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배서하여 교부
5	2016. 10. 31.	55,000,000	E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배서하여 교부
6	2016. 10. 31.	275,000,000	상동
7	2017. 1. 20.	110,000,000	계좌 송금
합계		815,1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 중단시 피고가 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52.5%로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60,175,000원⁷⁾ 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560,175,000원을 초과한 815,1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254,925,000원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그 비용은 아래 비용대납표(이하 '이 사건 비용대납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8,605,902원⁹⁾

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88,605,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현지인건비(G)	15,222,820
2	FTE PNP 양중비(H)	8,000,000
3	한국인 일용직 인건비(I)	2,750,000
4	한국인 일용직 항공료 및 비자(J, K, L)	1,278,000
5	M: MFTE 복합판 4T(I/V)	3,300,000
6	고용노동부 진정신고(K, L)	10,900,000
7	현지인건비(N)	39,100,000
합계		80,550,820

3) 이 사건 계약상 설치완료일은 2017. 2. 28.임에도, 피고는 2017. 2. 9.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 나머지 공사를 이어받아 2017. 11. 18.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부터 같은 해 11. 18.까지의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765,330,000원 중 60%인 459,19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공사 중단시 피고가 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적어도 90% 이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을 원고의 이사인 O의 요청에 따라 돌려주었으므로, 피고가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없다.
- 2) 이 사건 비용대납표 순번 2 내지 6항 기재 각 항목의 비용은 피고가 알 수 없는 비용이거나 원고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이어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 3)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가. 이 사건 계약의 약정해제

피고가 2017. 2. 9.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포기한 사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2017. 2. 17.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을 2017. 2. 10.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2. 17.경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합의해제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 9,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사의 포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피고에게 떠넘겨 당초 피고가 예상한 것 이상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설비 중 피고가 설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설비에 대해서 원고의 직원인 R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오류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추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고가 추가 발생한 인건비 및 추가공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결국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사의 포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설계도면의 오류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설계의무

(가) 위와 같은 피고의 설계도면 오류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설비 전체의 설계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 전체를 설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 별첨 1의 3항에는 '위 2항의 제작수량의 설계'라고, 2항에는 이 사건 설비 전체인 'FTE+OHCV, TALLER PNP, 총내 PNP, MCT'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37, 3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설비 중 CFTE10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계약서 별첨 1의 3항과는 달리 같은 계약서 제2조에는 '설계'가 피고의 계약범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②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각 견적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2016. 8.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FTE 12 LINE에 관한 FTE&OHCV (C TYPE)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해서만 설계비용이 산정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설비들에 대해서는 설계비용이 산정되어 있지 않다.
- ③ 원고가 2018. 3. 6. 작성하여 이 사건 감정인에게 제출한 공정 절차 설명서(갑 제37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CFTE를 제외한 MFTE11) MCT, MPNP02, TALLER STK의 설계를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④ 피고의 이사인 P이 2016. 9. 7.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39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Q과 원고의 직원인 U의 2016. 9. 7. 회의 결과 음성 데모라인 설치와 관련하여 MFTE, MPNP, TALLER STK의 각 설계자가 1명씩 상주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P이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대해서 '데모라인은 MCT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다르고, 설계자 상주도 문제된다.'는 취지로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CFTE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에 대한 설계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이메일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원고의 직원인 R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 중 CFTE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는데¹²⁾ 이는 CFTE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들에 대한 설계책임이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설계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원고측에서 제공한 설계도면의 오류 및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설비 중 CFTE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들에 대해서 원고가 그 설계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나머지 설비들에 대해서 피고가 R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R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오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모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설계도면 오류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피고의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관리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관리의무의 소홀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사납품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¹³⁾ 나아가, 피고에게 당초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예상하였던 인건비를 초과한 인건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관리의무 소홀 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다.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이때의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달리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도급의 실질을 가지는 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소프트웨어 공급계약에 관한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등 참조).

나.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설비는 원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므로, 이 사건 설비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이 사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그런데, 원고의 계약해제 당시 이 사건 설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5% 이상 완성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인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설비를 그대로 인도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의무의 범위

1) 이 사건 공사 기성고 비율의 산정방법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성고 비율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중단 시점까지 시공 부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는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합친 전체 비용 가운데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3.자 이 사건 감정기일에서 위와 같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이 중국 청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에 의해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바,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 중단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2) 기성고 비율의 구체적 산정 가) 감정인 S(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이 산정한 기성고 비율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별지 2 '감정인의 비용산정내역' 기성고 비율란 기재와 같이 52.5%이다.

나) 기성고 비율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 약 2개월 전에 원고가 이미 원청인 E로부터 공사대금 2,600,000,000원 중 83%에 해당하는 2,163,00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 중단시까지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 역시 52.5%를 초과하여 약 90%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이 이 사건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본래 피고가 지출하였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아래 '인정하지 않는 비용내역표' 기재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의 1,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감정인이 기성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원·피고의 지출비용에 관한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아래 '인정하지 않는 비용내역표' 기재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별지 1 '이 법원이 인정한 비용산정내역' 기성고 비율란 기재와 같이 55.5%로 봄이 상당하다.

1	FTE PNP 양중비(H)	8,000,000	원고는 피고가 PNP 양중을 해야 하는데, 기능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양중비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직접 양중업체인 T에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 별첨 2. 8항에 따르면 SET-UP 장비는 전량 사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SET-UP 장비인 양중기 역시 피고가 아닌 원고가 제공해야 하는 장비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중비 지불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소계	8,000,000	
2	제관업체	101,613,654	원고는 피고가 제관품을 조립시 제대로 부착하지 않아서 원고가 새로 제관품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별첨 2. 1항에 따르면 제관품은 전량 피고가 아닌 원고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관품 조립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FTE PNP 양중비(H)	8,000,000	원고는 피고가 PNP 양중을 해야 하는데, 기능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양중비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직접 양중업체인 T에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 별첨 2. 8항에 따르면 SET-UP 장비는 전량 사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SET-UP 장비인 양중기 역시 피고가 아닌 원고가 제공해야 하는 장비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중비 지불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가공비용	4,590,000	이 부분 비용은 제관품을 가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위 2.항 기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사다리 및 프로파일 중 프로파일	11,422,445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지 않은 사다리와 프로파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함께 13,422,445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비용 중 사다리 비용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11,422,445원은 프로파일 자재 구매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 별첨 2. 2항에 따라 피고가 아닌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소계	117,626,099	
	합계	125,626,099	

3)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 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액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97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5.5%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592,185,000원(= 538,350,000원(= 970,000,000원 × 55.5%) + 53,835,000원)이다.

나)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액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5,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는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을 원고의 이사인 O의 요청에 따라 O에게 반환한 사실, 원고가 위 O로부터 120,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695,100,000원(= 815,100,000원 - 1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사인 P과 원고의 이사인 O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적정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120,000,000원을 위 O이 피고로부터 돌려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회수한

120,000,000원은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는 102,915,000원(= 피고가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695,100,000원 -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592,185,000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102,9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위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7.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위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2017. 2. 10.부터 2017. 9. 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가 대납한 비용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8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아래 '인정되는 비용대납표' '원고가 지출한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3,155,8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비용대납표 순번 2항 기재 8,000,000원은 앞서 4.다.2).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대신 지출한 73,155,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현지인건비(G)	15,222,820	15,222,820	다툼 없음
2	한국인 일용직 인건비(1)	2,750,000	3,025,000	피고는 알 수 없는 비용이 투입된 것이거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2017. 2. 10. 이후 발생한 비용이어서 피고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이 이 부분 항목의 비용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SET-UP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항목의 비용은 2017. 2. 10.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국인 일용직 항공료 및 비자(J, K, L)	1,278,000	1,278,000	피고는 이 항목의 비용이 원고의 직원인 U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J, K, L에 대하여는 본래 피고가 노임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U가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M: MFTE 복합판 4T(I/V)	3,300,000	3,630,000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가 제공한 도면에 MFTE 복합판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은 이 항목의 비용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항목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고용노동부 진정신고(K, L)	10,900,000	10,900,000	위 3항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기재와 같다.
6	현지인건비(N)	39,100,000	39,100,000	다툼 없음
합계		72,550,820	73,155,820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출한 73,155,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가 대납한 비용에 관하여 2017.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은 구상금의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구상금에 대한 2017. 2. 10.부터 2017. 9. 1.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

나. 지체상금 채권의 발생 여부

이 사건 계약에서의 설치완료일은 2017. 2. 28.이고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의 비율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설치완료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피고의 공사 중단·포기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합의 해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공사 중단·포기로 해제되었고, 위와 같은 공사의 중단·포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체상금의 범위

1) 지체상금의 시기 이 사건 계약상 지체상금의 시기는 설치완료일 다음날인 2017. 3. 1.이다.
2) 지체상금의 종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2017. 2. 10.부터 잔여 공사를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88일이 경과한 2017. 5.8.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포기한 다음날인 2017. 2. 10. 무렵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원고는 실제로 2017. 2.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7. 2. 10.자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다.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기성고 비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55.5%이므로, 원고가 선정한 후속업체가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완공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이 사건 계약상 약정 공사기간인

197일(2016. 8. 16.부터 2017. 2. 28.까지)에 잔여공사에 대한 기성고 비율인 44.5%(= 100% - 피고의 기성고 비율 55.5%)를 곱한 일수인 88일(= 197일 × 44.5%, '일' 미만은 올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2017. 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직접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의 다른 업자 선정을 위한 기간은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3) 소결론(지체상금의 액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체상금의 액수는 약정 설치완료일 다음날인 2017. 3. 1.부터 2017. 5. 8.까지 69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3/1,000에 따라 계산한 200,790,000원(=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금액 970,000,000원 × 69일 × 3/1,000)이다.

라. 지체상금의 감액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SET-UP 과정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원고가 제공해야 하는 양중기에 기능상 문제가 있어 새로운 양중기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가 다소 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제관품, Profile 등 사급품의 반입이 지체되어 피고의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원청인 E의 다른 파트 공사로 인해 원고의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할 무렵에도 마찬가지로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상한 인력의 약 170%¹⁴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 포기하였고, 원고 역시도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완성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에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상한 인력의 약 390%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위와 같은 인력의 과다 투입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이는 이 사건 공사 자체가 약정 공사기간인 197일 이상이 필요한 공사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산정한 위 지체상금 200,79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위 금액의 50%로 감액한 100,395,000원(= 200,790,000원 × 50%)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100,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2017.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은 지체상금의 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지체상금에 대한 2017. 2. 10.부터 2017. 9. 1.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6,465,820원(= 4.항 기재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102,915,000원 + 5.항 기재 원고가 대납한 비용 73,155,820원 + 6.항 기재 지체상금 100,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정승혜

판사노용준

별지

3층의 OHCV(Over Head Conveyor)에 전달해주는 리프터(Lifter)이다.

2) TALLER STK가 층과 층 사이에서 전달해주는 리프터인 반면, 층내 PNP는 하나의 층 내에서 OHS에서 받은 OLED Cassette를 내려 하부 컨베이어 라인에 전달해주는 리프터(Lifter)이다. Mask Line에 있는 리프터 2호기를 MPNP02라고 한다.

3) Machine Centering Transfer의 약자로, OHS를 통해 이송된 Cassette를 주행 로봇이 받아 Centering Buffer에 안착시켜 Cassette의 들어진 중심을 맞추고, 중심이 맞춰진 Cassette는 주행 로봇이 받아 Main MCT로 이송시킨다.

4) 이 사건 계약서에는 TOLLER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TALLER의 오타로 보인다.

5)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별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상 '별첨 2'라고 한다.

6) 어음의 경우 원고의 배서일

7) = 509,250,000원(=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금액 970,000,000원 × 기성고 비율 52.5%) + 부가가치세 50,925,000원(= 509,250,000원 × 10%)

8) = 815,100,000원 - 560,175,000원

9) = 80,550,820원 + 부가가치세 8,055,082원(= 80,550,820원 × 10%)

10) Cell Line FTE의 약자로, Stocker와 OHS의 OLED Cassette 이송 공정 흐름을 연결시켜주는 장비이다.

11) Mask Line FTE의 약자로, Stocker와 OHS의 OLED Cassette 이송 공정 흐름을 연결시켜주는 장비이다.

12) 원고의 직원인 R가 피고에게 CFTE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19. 7. 3.자 준비서면, 원고의 2019. 7. 4.자 준비서면 참조).

1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PNP 양중기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새로운 양중기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가 일부 지체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시까지 투입한 인력 5,440MD ÷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상한 인력

3,146MD × 100